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자료

행정지원국
세무과

시세조례 개정 참고자료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임

○ 기존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종합토지세 규정은 모두 삭제함

○ 지방세 세목 : 17 → 16개 세목

- 보통세 - 도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 시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 도세 : 공동시설세(재산세 병과),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재산세 병과)
- 시세 : 도시계획세(재산세 병과), 사업소세

○ 건축물 →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됨

- 건축물¹⁾ : 건축법에 의한 공장, 상가 등 주택외 건물
- 주 택²⁾ :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별장 제외)

○ 재산세 납기변경

세 목	당 초	변 경
재 산 세	7.16~ 7.31	주택분(건물+토지) $\frac{1}{2}$ + 주택외 건물 : 7.16~7.31 주택분(건물+토지) $\frac{1}{2}$ + 주택외 토지 : 9.16~9.30
종합토지세	10.16~10.31	삭제, 재산세로 통합후 납기는 9월로 조정

★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건물, 토지)도 재산세의 납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과표증가에 따른 세율을 0.2%→0.15%로 0.05% 인하함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라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자동차세** 배기량 조정 : 1500cc → 1600cc

→ 현행 자동차는 내수용(1500cc)과 수출용(1600cc)으로 구분 생산함에 따라 연구개발비용등이 증가하여 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기량을 조정함

○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 규정

→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잦은 세율변동으로 지방세법상의 세율을 인용함

○ **농업소득세** 5년간(2004~2008년 귀속 농업소득) 과세중단

→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업 활성화 및 농업기반 육성

■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 기본방향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과세 (원가방식 → **시가방식**으로 전환)
 - 주택에 대하여도 **시가로 평가**하고 그 **가격을 공시**
 - 재산세 **과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가표준액의 50%** 적용

- 보유세제 이원화 :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

1차 : 3단계의 낮은 세율로 **재산세(지방세)** 과세

2차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주택** : 시가표준액 9억 이상

- **토지** :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종합합산³⁾ 토지

40억 이상의 별도합산⁴⁾ 토지

[★ 농지(전, 답, 과수원) 및 공장용지,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미부과]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세수감소분은 교부세** 등으로 차등 교부됨

※ 종합부동산세 대상 : 전국에 약 5만여명

3)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 잡종지 및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4) 영업용·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 터미널, 차고, 야적장, 유통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